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안전 관련법 위반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

■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470호)

2024. 5.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산업안전 관련법 위반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류호정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3. 11. 16.

다. 회 부 일: 2023.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고, 문화재청장은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위반으로 4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인명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u>를」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박물관, 대학부설 연구시설 및 한국문화재단이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¹⁾,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집·기록하고 있음.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단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그런데 최근 매장문화재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부·조사원 등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현장 사고 및 행정처분 현황]

연도	발굴기관	장소	사고내용	행정처분(처분청)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매장문화재법 (문화재청)
2019	(재)○○ 연구원	전북 진안군	·시굴조사 굴착갱 붕괴 ·인부 1명 사망, 1명 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등 ·벌금 500만원 ·과태료 60만원	·발굴허가 미 준수 ·업무정지(경고)
2021	(재)△△ 연구원	경북 고령군	·현장작업 대기 중 폭풍 및 폭우 ·인부 1명 사망, 4명 찰과상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벌금 320만원	·없음 (업무시간외 사고)

-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연도	발굴기관	장소	사고내용	행정처분(처분청)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매장문화재법 (문화재청)
2022	(재)◇◇◇ 연구원	경기 화성시	·시굴조사 굴착경 붕괴 ·조사원 1명, 굴삭기 장비기사 1명 사망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등 ·과태료 1,800만원	·발굴허가 미 준수 ·업무정지(경고) 과태료 300만원

※ 자료: 문화재청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발굴현장에서 근무하는 조사원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발굴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을 감소·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다만, ①개정안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요건 중 ‘직무수행’에 있어 직무의 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매장문화재 발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등록 취소될 여지가 있고, ②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내용, 안전사고의 발생 사유 및 경중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모든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³⁾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단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재청은 ①발굴현장의 특수성과 사고의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안전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②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조사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4